

보 고 안 건

연번	유형	안 건 명	제안부서
1	정관개정	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(안) 보고	서울의료원

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

1.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(안) 보고

□ 보고근거

-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지도·감독 등) 및 서울의료원 정관 제40조(정관의 변경)

-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지도·감독 등)
 - 의료원은 정관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서울의료원 정관 제40조(정관의 변경)
 - 의료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.

□ 개정내용

- 보건복지부 ‘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’ 수행기관 선정 및 서울시 보건의료복지 301 네트워크 계획에 따른 조직 개편
 - 제41조(조직 및 정원)에 명시된 조직 개정 및 전담 인력 정원 증원
 - (현행) 공공의료사업단(2개팀) → (개정) 공공의료본부(5개팀)
- 본·분원 통합운영 및 인력증원을 위한 정원표(별표2) 개정
 - 본원 및 강남분원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정원 통합
 - 보건복지부 사업 수행에 따른 정원 증원(4명) : 간호직 2명, 관리직 2명
 - 정원 증원(1명) : 관리직 1명(소방안전 전담인력)

□ 향후계획(안)

- 이사회 정관 개정(안) 의결 : '20.6월
- 서울특별시시장 승인 및 정관 개정(안) 시행 : '20.7월

작성자 | 기획조정실장 : 조동희(☎2276-7015) 기획경영팀장 : 김학진(7050) 담당 : 한경선(7042)

붙임.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(안) 신·구조문 대비표

정관 신·구조문 대비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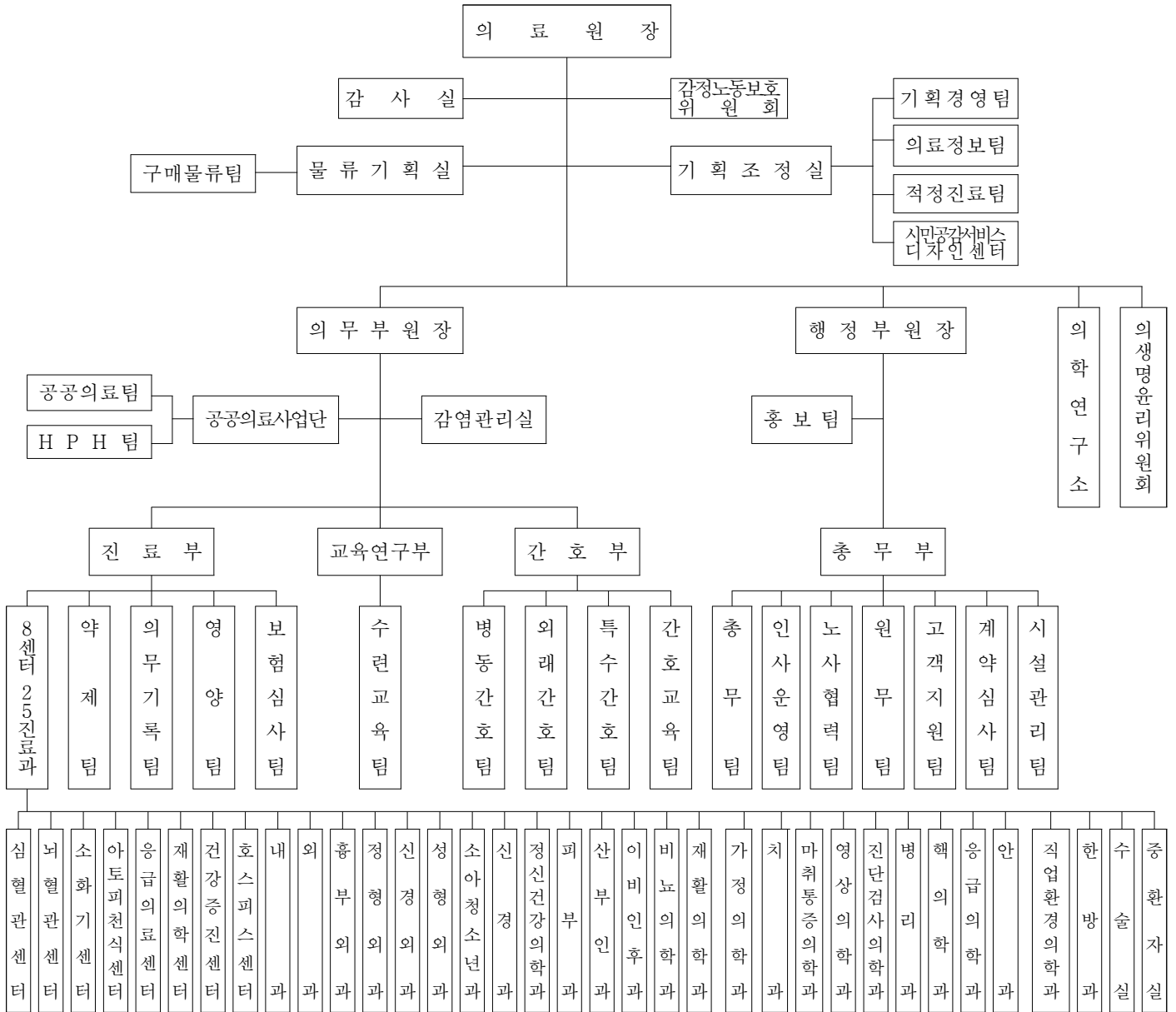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41조(조직 및 정원) ① 의료원의 조직은 4부 1사업단, 9센터 25진료과 4실 23팀, 1연구소, 2위원회로 별표 1과 같다.</p> <p>② 직종별, 직급별 정원은 <u>별표 2</u>와 같다.</p> <p>③·④ (생략)</p>	<p>제41조(조직 및 정원) ① ----- 4부 4실 1본부, 9센터 25진료과 26팀, 1연구소, 2위원회로 <u>별표 1</u>과 같다.</p> <p>② ----- <u>별표 2</u>-----.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별표1. 기구표</p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pre> graph TD A[공공의료사업단] --> B[공공의료팀] A --> C[H P H 팀] </pre> </div>	<p>별표1. 기구표</p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pre> graph TD A[공공의료본부] --> B[공공의료사업지원팀] A --> C[건강돌봄네트워크팀] A --> D[의료사회복지팀] A --> E[진료협력팀] A --> F[H P H 팀] </pre> </div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별표2. 정원표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계</th> <th>임원</th> <th>의사직</th> <th>약무직</th> <th>간호직</th> <th>보건직</th> <th>관리직</th> <th>연구직</th> <th>기능직</th> <th>운영지원직</th> <th>공무직</th> <th>임금제 과제 비정규직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합계</td> <td>1,731</td> <td>3</td> <td>273</td> <td>15</td> <td>712</td> <td>122</td> <td>138</td> <td>9</td> <td>131</td> <td>-</td> <td>307</td> <td>21</td> </tr> <tr> <td>본원</td> <td>1,683</td> <td>3</td> <td>264</td> <td>14</td> <td>697</td> <td>118</td> <td>131</td> <td>9</td> <td>127</td> <td>-</td> <td>299</td> <td>21</td> </tr> <tr> <td>분원</td> <td>48</td> <td>-</td> <td>9</td> <td>1</td> <td>15</td> <td>4</td> <td>7</td> <td>-</td> <td>4</td> <td>-</td> <td>8</td> <td>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계	임원	의사직	약무직	간호직	보건직	관리직	연구직	기능직	운영지원직	공무직	임금제 과제 비정규직	합계	1,731	3	273	15	712	122	138	9	131	-	307	21	본원	1,683	3	264	14	697	118	131	9	127	-	299	21	분원	48	-	9	1	15	4	7	-	4	-	8	-	<p>별표2. 정원표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계</th> <th>임원</th> <th>의사직</th> <th>약무직</th> <th>간호직</th> <th>보건직</th> <th>관리직</th> <th>연구직</th> <th>기능직</th> <th>운영지원직</th> <th>공무직</th> <th>임금제 과제 비정규직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합계</td> <td>1,736</td> <td>3</td> <td>273</td> <td>15</td> <td>714</td> <td>122</td> <td>141</td> <td>9</td> <td>131</td> <td>-</td> <td>307</td> <td>21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계	임원	의사직	약무직	간호직	보건직	관리직	연구직	기능직	운영지원직	공무직	임금제 과제 비정규직	합계	1,736	3	273	15	714	122	141	9	131	-	307	21
구분	계	임원	의사직	약무직	간호직	보건직	관리직	연구직	기능직	운영지원직	공무직	임금제 과제 비정규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합계	1,731	3	273	15	712	122	138	9	131	-	307	2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본원	1,683	3	264	14	697	118	131	9	127	-	299	2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분원	48	-	9	1	15	4	7	-	4	-	8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계	임원	의사직	약무직	간호직	보건직	관리직	연구직	기능직	운영지원직	공무직	임금제 과제 비정규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합계	1,736	3	273	15	714	122	141	9	131	-	307	2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<개정 전>

[별표1]

기 구 표

(4부 1사업단 9센터 25진료과 4실 23팀, 1연구소, 2위원회)



<개정 후>

[별표1]

기 구 표

(4부 4실 1본부, 9센터 25진료과 26팀, 1연구소, 2위원회)

